

검 정 신 청 서

※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	① 상 호					
	② 대 표 자		③ 사업자등록번호			
	④ 주 소	(전화:)				
제조자	⑤ 상 호					
	⑥ 주 소					
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내용						
⑤ 형식승인 증서번호	⑥ 품 명	⑦ 규 격	⑧ 형 식	⑨ 수 량	⑩ 제조번호	⑪ 제조일자
⑫ 검 정 요 청 일				⑬ 검 정 장 소		
⑭ 비 고						

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인)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5일
유 의 사 항	☐ 벌칙 규정 ○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☐ 과태료 규정 ○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☐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. ☐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(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) ○ 형식승인 품명·형식 및 규격(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 ○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○ 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(예: 20070112 -1) ☐ 검사의 생략 ○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「선박안전법」 제7조(건조검사), 제8조(정기검사), 제9조(중간검사), 제10조(임시검사), 제11조(임시항해검사) 및 같은 법 제12조(국제협약검사)에 따른 최초의 선박검사 또는 건조검사 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.		